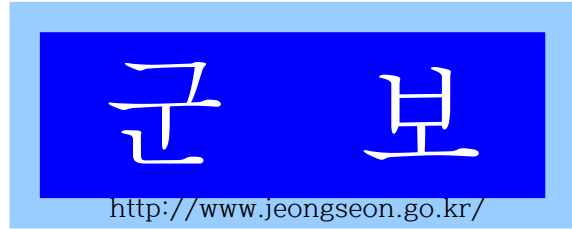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8호 2020. 5. 6.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72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73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7
- 정선군 조례 제2774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13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4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50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31
- 정선군 공고 제2020-560호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고시 조정 행정예고.....3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62회 정선군의회(2020. 04. 27.)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2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시설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2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퍼센트
2.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거주자 50퍼센트.(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3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0퍼센트
6.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설의 종류
병방산 군립공원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광하리 굴암리	1. 짚-와이어 시설 o 짚-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 o 스카이라운지 o 광장 및 주차장 2. 스카이워크 시설 o 전망시설 o 매표 및 관리소 o 주차장 o 화장실 3. 짚라인 시설 o 짚라인 탑승 및 하강장 4. 짚코스터 시설 5. 어드벤처 시설 6. 야영장 o 글램핑 시설 (13개) o 주차장 o 화장실 o 세면장 o 조리시설 7. 기타 편의시설

[별표 2]

시설사용료(제12조의2 관련)

1. 자연체험시설

가. 시설별 이용요금

(단위: 원)

시설명칭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개별이용	2,000	35,000	10,000	13,000	10,000
글램핑숙박시	무료	28,000	8,000	10,000	8,000

※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1,000원

※ 짚와이어 이용자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무료

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올패키지	짚패키지	비 고
글램핑숙박자	46,000	41,000	
글램핑비숙박자	51,000	46,000	

※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 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2. 야영장

가.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 고
글램핑	대형	90,000	120,000	※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소형	80,000	110,000	

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 ②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65세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퍼센트 감면한다.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 시설사용료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2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퍼센트 2.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거주자 50퍼센트.(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3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u>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0퍼센트</u> 6.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30퍼센트</u>
--	--

□ 제안이유

가. 병방산 군립공원에 짚라인 등 자연체험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2조의3)

나. 군립공원 내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별표1)

다.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를 규정함 (별표2)

제262회 정선군의회(2020. 04. 27.)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3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선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다.”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설장비 불법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 -----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 ----- ----- 경영하는 ----- ---.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 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생 략)

<신 설>

선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

<신 설>

<신 설>

제8조(구성) ①·② (생략)

<신 설>

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
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
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
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
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
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
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
다.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
용)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
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
설장비 불법 대여 행위 등을 근
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u>의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 <u>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	---

□ 제안이유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개정 강화(제2조)

- (기존) 건설업, 건설용역업
- (개정)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

나. 분할발주 검토 의무화 및 지역건설산업체 공동참여·하도급 비율 개정 확대 (제3조의2, 제3조의3)

다. 지역건설근로자(건설기계 포함) 우선고용 조항 신설(제3조의4)

제262회 정선군의회(2020. 04. 27.) 및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74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고보조금으로” 를 “정선군에서”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이 국고보조금으로” 를 “군이” 로, “건설하여 무주택 군민에 임대하여” 를 “건설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건설” 을 “주택건설기준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입주금(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에게” 를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할때에” 를 “인정할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주자격 범위)” 를 “(임대차계약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주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또는 정선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가발생” 을 “공가 발생” 으로, “일정기간” 을 “일정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발생시” 를 “발생 시”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계약” 을 “임대차계약” 으로,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을 “따른” 으로, “입주보증금” 을 “임대보증금”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발생 시 군수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의 합계가 월임대료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1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입주해제 및 퇴거)”를 “(임대차계약해제 및 퇴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입주해제와”를 “임대차계약해제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퇴거일은 입주해제후 30일”을 “퇴거기한은 임대차계약해제 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를 각각 “할 때”로, 같은 항 중 “하며 이주한 날로”를 “하며, 군수는 이주한 날”로 한다.

2. 임대료를 연속하여 3월이상 체납한 때

제13조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한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14	
사북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해피아리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3	
여미솔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233	
고한행복주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u>국고보조금으로</u>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정선</u> <u>군에서</u>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아파트”라 함은 <u>군이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군민에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u> 을 말한다.	1. ----- <u>군이</u> ----- ----- <u>건립하여</u> ----- -----.
2. “부대복지시설”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 판매시설, 비상저수시설, 기타 <u>주택건설에 관한</u> 규칙에 의거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 ----- ----- <u>주택건</u> <u>설기준 등</u> ----- -----.
3.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u>입주금(보증</u>	3. ----- ----- <u>임대보증금</u> , -----

금)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연체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4. (생 략)

제4조(아파트 관리) ①아파트 관리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할 수 있다.

②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으로 하되, 광산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

4. (현행과 같음)

제4조(아파트 관리) ①-----

-----.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아파트 소재지 읍·면장이 -----.

②-----
----- 인정할 때-----
-.

③제2항에 따른 -----
-----.

④제3항에 따른 -----

-----.

제5조(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또는 정선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있다. 다만, 임대공급 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주자 선정) ①임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시에는 임주신청 대기순에 의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임주계약) 임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임주보증금) ①임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주계약을 체결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주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주자가 계약에 정한바에 다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생략)

②아파트 임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별표2와 같다.

----- 공가 발생-----
----- 일정 기간-----
-----.

제6조(임주자 선정) ①-----

----- 발생 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임대차계약) -----
----- 임대차계약-----.

제8조(임대보증금) ①-----
-----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②----- 다른-----

----- 임대보증금-----.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

③·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 징수한다.

⑥ 임대료를 규칙이 정하는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신설>

제11조(임대기간) ① 아파트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시 2년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략)

제12조(입주해제 및 퇴거) ① 입주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와 다음 각호1에 해당

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
-----.

⑥ ----- 기
한 내 -----
-----.

⑦ (현행과 같음)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발생 시 군수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의 합계가 월임대료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1조(임대기간) ① -----
--- 2년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차계약해제 및 퇴거)
① -----
제5조에 따른 -----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때, 퇴거일은 입주해제후 30일 이내로 한다.

1. (생략)

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월 이상 채납할 때

3. (생략)

4.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로서 부적합 할 때

②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생략)

②군수는 아파트의 매입 또는 건립목적 및 기능의 감소 또는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 임대차계약해제와 -----
----- . --- 퇴거기한은 임대차계약해제 후 3개월 -----
----- .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를 연속하여 3월이상 채납한 때

3. (현행과 같음)

4. -----

-- 할 때

②----- 할 때-----
----- 하며, 군수는 이주한 날-----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에 따라 -----
----- .

제14조(준용) -----
----- 「공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1]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정선군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3번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	

[별표2]

입주부담금

(단위:원)

아파트명	평 형 전용/㎡	입 중 보증금	층별	월임대료	월관리비
사 북 고 한	13평형	1,150,000	1층	37,000	13,000
			2	41,000	
			3	41,000	
			4	38,000	
			5	35,000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
-----.

[별표1]

정선군 임대아파트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고한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14	
사북임대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해피아리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3	
여미솔아파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233	
고한행복주택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10길 28-24	

삭제

□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군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 및 오탈자 정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료 감면조항 신설(제9조 8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가능
 -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감면하되 감면금액의 합이 월 임대료의 2배 이내

나. 입주자 및 아파트 관리

○ 입주자 관리

- 입주 자격 상실 시 퇴거 기한 및 계약해지 요건 완화(제12조)
- 광산근로자에 대한 우선입주 사항 삭제(제5조)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군수가 정할 수 있게 변경하고 별표2(입주부담금) 삭제(제9조)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4조)

다. 기타사항

- 국고보조금으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정선군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아파트로 수정(제1조, 제3조)

규 칙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4. 17.)에서 의결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43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으로, “신청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로, “선정 한다”를 “선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임대보증금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입주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별표1”을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u>다음 각 호의</u>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u>신청한다</u> .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 ----- ----- <u>입주자 모집</u> <u>공고 시 명시한</u> ----- ----- <u>신청하여야</u> <u>한</u> <u>다</u> .
1. <u>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u>	<u><삭 제></u>
2. <u>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u>	<u><삭 제></u>
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u>별지 제2호서식과</u>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신청서는 <u>별지 제3호서식에</u> 의한다.	② ----- ----- ----- <u>별지 제</u> <u>2호서식,</u> ----- ----- -----.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제3조(입주자 선정) ① ----- ----- ----- ----- ----- -----.

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입주 부담금

3.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 한다.

1. 광산 근로자 재직경력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주

③ 제2항의 순위에서 경합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2. 국가 유공자 (보훈처 증명)

3. 부모 봉양자

4. 기타 군수가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

1. (현행과 같음)

2. 임대보증금

3. (현행과 같음)

② -----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
----- 선정한
다.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삭 제>

제4조(임대차계약) ① -----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

별표1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한 표준임대차계약서-----
-----.

② ----- 지정기일 내 -----

-----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

<삭 제>

삭제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건물의 표시

건 물 명	동	호	면 적(m ²)	비 고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 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익이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① "을"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 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 하며, 계약 해지후 "을"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임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 "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 "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 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 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입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해약)** 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		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		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공동전기료	원	공동전기료	원	공동전기료	원
정화조청소	원	정화조청소	원	정화조청소	원
물탱크청소	원	물탱크청소	원	물탱크청소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미납금액	원	미납금액	원	미납금액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위 금액을 귀은행(지 점)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추납인		추납인		추납인	

※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 영수증에 수납인 과 취급자인이 없거나
정정한 것은 무효입
니다.

☐ 개정이유

군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 및 오탈자 정정과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제3조)

- 입주자 선정 시 경합 된 때 입주 순위를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 순위로 변경하고 각 호 순위를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및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으로 변경

나. 임대차계약서(제4조)

- 임대차계약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1(정선군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삭제

다. 임대료 징수 조항 삭제(제5조)

- 임대료 징수 조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50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82-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3-20호선	L=71.0m, B=6.0m	-	L=71.0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4. 24 ~ 2020. 5. 08.)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6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
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276-4	도	264	2		정 선 군			
2	"	276-5	대	9	9		정 선 군			
3	"	279-6	대	20	19		정 선 군			
4	"	280-5	대	21	15	정선읍 봉양리 282-6	전 순 택			
5	"	280-6	대	30	13		정 선 군			
6	"	282-3	도	91	7		국(국토교통부)			
7	"	282-5	대	65	3	정선읍 봉양리 282-6	전 학 규			
8	"	282-10	대	19	10		정 선 군			
9	"	282-11	대	34	27		정 선 군			
10	"	283-5	대	123	5	정선읍 봉양리 284-2	김 옥 기	봉양리 209-3	정선군 산림조합	근저당권설정
11	"	283-10	대	20	20		국(기획재정부)			
12	"	283-11	대	29	29		정 선 군			
13	"	284-3	대	114	11	정선읍 비봉안길14-17	배 해 랑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14	"	284-7	대	4	4		정 선 군			
15	"	284-8	대	40	40		정 선 군			
16	"	284-10	대	36	36		정 선 군			
17	"	284-11	대	5	5	정선읍 봉양리 284-6	김 도 근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18	"	284-12	대	20	20	정선읍 비봉안길14-17	배 해 랑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19	"	284-13	대	11	11	정선읍 봉양리 284-6	김 도 근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0	"	303-4	도	2,618	179		국(국토교통부)			
계		20필지		3,573	465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1	봉양리	282-5	주택	스멘트블럭	m ²	17.0		정 선 군
2	"	282-1	주택	스멘트블럭	m ²	13.0		정 선 군
3	"	280-2	차고	함석슬레이트	m ²	4.0	정선읍 봉양리 220-8	박건영외3인
4	"	280-5	담장	벽돌(H=1.8)	m	16.3	정선읍 봉양리 280-1	전 순 택
5	"	279-1	담장	벽돌(H=1.8)	m	10.7	정선읍 비봉안길 14-10	이 경 화
6	"	283-5	주택	벽돌구조	m ²	7	정선읍 봉양리 283-5	김 옥 기
7	"	284-8	창고	블럭스레트	m ²	7	정선읍 봉양리 284-2	이 금 득
			화장실	블럭스레트	m ²	2.3		
			담장	벽돌(H=1.7)	m	14.0		
8	"	284-10	주택	스멘트블럭	m ²	21		정 선 군
9	"	284-12	창고	블럭슬라브	m ²	4.8	정선읍 비봉안길 14-17	배 해 랑
			화장실	블럭슬라브	m ²	2.64		
			담장	벽돌(H=1.7)	m	6.3		
10	"	284-7	화장실	블럭슬라브	m ²	3	정선읍 봉양리 422-1	최부순외1인
11	"	284-11	창고	블럭슬라브	m ²	15	정선읍 봉양리 284-6	김 도 근
			화장실	블럭슬라브	m ²	3.57		
			담장	벽돌(H=1.8)	m	15.0		

정선군 공고 제2020-560호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고시 조정 행정예고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고시를 조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정 선 군 수

1. 조정 이유

정선군 공영버스 운영관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제공하고자 정선군 여건에 맞는 공영버스 운임체계를 조정·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운임체계 : 기본요금+거리비례제 ⇒ 기본요금+구간요금제
- 버스운임 체계 변경 및 조정

3. 고시 조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기간 : 2020. 4. 29. ~ 2020. 5. 20. (21일간)

5. 의견 제출

이 고시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시 조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수(참조 : 안전과장)

(E-mail : hyunbh6333@korea.kr, 전화 033-560-2517, Fax 033-560-2174)

(단위 : 원)

- 36 -

구분			현행			조정			비고									
시계 외 요금	요금구분		일반	청소년	초등	<table><tr><td colspan="3">고한~태백 구간요금</td></tr><tr><td>일반</td><td>청소년</td><td>초등</td></tr><tr><td>2,000</td><td>1,000</td><td>500</td></tr></table>			고한~태백 구간요금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정선군 교통카드 사용가능 (고한~두문 동)
	고한~태백 구간요금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면허시험장	1,400	1,100	700														
		고한 ~ 태백	태백	2,400	1,900	1,200	<table><tr><td colspan="3">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td></tr><tr><td>일반</td><td>청소년</td><td>초등</td></tr><tr><td>1,000</td><td>500</td><td>500</td></tr></table>			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			일반	청소년	초등	1,000	500	500
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																		
일반	청소년	초등																
1,000	500	500																
<table><tr><td colspan="3">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td></tr><tr><td>일반</td><td>청소년</td><td>초등</td></tr><tr><td>2,000</td><td>1,000</td><td>500</td></tr></table>			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정선군 교통카드 사용불가 (두문동~태 백)						
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유료)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고시 조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공 고 명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고시 조정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금 고시 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